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견

의 안
번 호

68

제출연월일 : 2003년 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지방공사 청주의료원의 장례식장은 규모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되어, 수요에 따른 역할의 수행이 미흡하므로 도민 이용 편의 및 건전한 장례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의 장례식장 신축이 필요하고
- 2005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대비 및 장애인에게 양질의 체육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운영중인 충청북도 곰두리체육관을 증축코자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재산의 취득

◀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및 전임도로 부지매입 ▶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554-6번지(청주의료원 내)
- 규 모
 - 연건평 : 3,140㎡(950평, 지하 1층, 지상 2층), 빈소 10실
 - 전임도로부지매입 : 흥덕구 사직1동 736외 2필지 1,005㎡(304평)
- 사업기간 : 2003. 5 ~ 2004. 12(20개월)
- 사 업 비 : 4,900백만원(장례식장 4,500, 부지매입 400)
 - 도바 2,650, 청주의료원 2,250
- ※ 현 장례식장 및 부대시설 철거 : 1건(10동) 1,265.8㎡ 173,208천원

◀ 충청북도 공동리체육관 증축 ▶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623-5

○ 규 모 : 725㎡(219평)

※ 개방형 옥상에 실내체육관 증축

○ 사업기간 : 2003. 6~2003. 12(7개월)

○ 사 업 비 : 500백만원(국비 150, 도비 350)

3. 예산상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재산취득	재산처분	교환취득	교환처분	비 고
계	5,400,000 (도비:3,000,000)				
청주의료원장례식장 건립 및 전입도로 부지매입	4,500,000 (도비:2,250,000)				간물
	400,000 (도비:400,000)				잔입로 부지
충청북도 공동리 체육관 증축	500,000 (도비:350,000)				

※ 현 장례식장 및 부대시설 철거 : 173,208천원 미반영(재산 감소)

4.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서 : 별첨

5. 관계법령 : 별 첨

- 지방재정법 제77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

200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

(단위 : 천원)

열린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사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주소설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계	토지	1 건	1,005㎡ (304평)	400,000 (400,000)				
	건물	2 건	3,865㎡ (1,169평)	5,000,000 (2,600,000)				
	기타							
1	토지	청주 흥덕 사적1동 736	1,005㎡ (304평)	400,000 (400,000)	2003.10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진입로부지		
	건물	청주 흥덕 사적1동 554-6 (청주의료원 내)	3,140㎡ (950평)	4,500,000 (2,250,000)	2004.12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 축	
	기타							
2	토지							
	건물	청주 상당 사천동 623-5 (곰무리 채육관)	725㎡ (219평)	500,000 (350,000)	2003. 12	장혜안체육 활동서비스 제고	증 축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 추정가액내 ()는 도비에산입

2003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진가액 (사기표준액)	처 분 시 기	처 분 사 유	처분재산 소 유 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계	도지							
	건물	1 건	1,265.8㎡ (383평)	173,208				철 거
	기타							
1	도지							
	건물	청주 흥덕 사직1동 554-6(청주의료원내)	1,265.8㎡ (383평)	173,208	신건물 신축후	장례예식장 신축	충청북도	장례식장 및 부속건물 (10동)
	기타							
2	토지							
	건물							
	기타							

관 계 법 령 발 취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지 방 재 정 법	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자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공유재산심의회의)①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자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자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기부채납,무상양수,환지,무상귀속,교환,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출자,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처분(매각,양여,교환,부상귀속,건물의 멸실,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3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이 경우 예정 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상)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①별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①조례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13호서식) 2 ~ 5호 생략